

4.2.19 성과급적연봉제시행세칙

제정 2014. 04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85조 및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적용대상은 정년트랙 호봉제 교원에서 정년트랙 성과급적 연봉제 교원(이하 '성과연봉제 교원'이라 함)으로 전환된 교원으로 한다.

제3조(성과등급 결정과 지급률) ① 성과등급은 S등급, A등급, B등급, C등급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.

② 전임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서 1~2등급은 S등급, 3~5등급은 A등급, 6~9등급은 B등급, 10등급은 C등급으로 결정된다. 단, 교원업적평가관리규정상 연구중심형 교원의 연구논문 점수가 150점 이상 또는 봉사중심형 교원의 대학재정기여도 점수가 150점 이상인 C등급 교원일 경우 B등급을 부여한다.

③ S등급, A등급, B등급, C등급의 지급률은 각각 전임교원성과급연구보조비지급규정의 1~2등급, 3~5등급, 6~9등급, 10등급의 평균 지급률<별표 1>로 한다.

제4조(성과가산금) ① 성과연봉제 교원에서 성과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성과가산금이라 한다.

② 성과가산금 재원은 성과연봉제 교원의 동일 호봉 급여 인상에 따른 차액의 총합으로 한다.

③ 차액을 계산할 때는 성과연봉제 교원의 호봉 승급 월을 고려하여 승급전은 승급전 호봉 차액, 승급후에는 승급후 호봉 차액으로 계산한다.

제5조(성과연봉제 교원의 호봉 금액 결정) ① 제4조2항의 성과가산금 총합을 성과연봉제 교원으로 나눈 금액을 성과가산금 1차 기준액으로 한다.

② 성과가산금의 1차 기준액에 성과등급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해당 성과연봉제 교원의 성과등급별 1차 성과가산금으로 한다.

③ 제4조2항의 성과가산금 총합을 1차 성과가산금 총합으로 나눈 금액을 가중치로 하여, 이 가중치를 성과가산금 1차 기준액에 곱한 금액이 최종적인 성과등급별 성과가산금으로 한다.

④ 성과연봉제 교원의 당해연도 호봉 금액은 전년도 호봉제 교원의 호봉 금액에 3항에서 계산된 성과등급별 성과가산금의 합으로 한다.

⑤ 4항에서 규정된 성과연봉제 교원의 호봉 금액은 보수규정에 있는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지급액은 호봉제 연봉액 기준 금액으로 한다. 기준 금액으로 한다.

제6조(성과연봉제 교원의 승급) ① 성과연봉제 교원의 호봉승급은 호봉제 교원과 동일하게 해당 승급월에 승급한다.

② 호봉 승급액은 전년도 호봉표를 기준으로 승급액을 정한다.

제7조(성과연봉제 교원으로서의 전환 신청) ① 성과연봉제 교원으로서의 전환을 희망하는 호봉제 교원은 매학년도 3월말까지 <별표 2>의 전환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성과연봉제 교원에게는 당해 연도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급여

를 지급한다.

- ③ 성과연봉제 교원이 호봉제 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7조1항의 경우 2014학년도에는 공포 후 3주 이내로 한다.

〈별표 1〉 성과등급 결정과 지급률

전임교원성과급연구 보조비지급규정 등급	연봉제교원	
	성과등급(비율)	지급률
1	S(20%)	155%
2		
3	A(30%)	115%
4		
5		
6	B(40%)	77.5%
7		
8		
9		
10	C(10%)	35%

성과급적 연봉제 전환 신청서

소 속 : 학(부) (전공)

직 급 :

성 명 : (서명)

상기 본인은 호봉제 교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교원으로 전환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초당대학교 총장 귀하